

사용검사(임시사용승인)신청서							
신청구분	☐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☐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			☐ 전체 ☐ 일부		임시사용승인기간	
	☐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☐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			☐ 전체 ☐ 일부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승인번호				공 사 착 공 일		년 월 일	
① 사업주체	상 호			등 록 번 호			
	대 표 자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
	영업소소재지	(전화 :)					
② 설 계 자	성 명			자 격 번 호			
	사 무 소 명			등 록 번 호			
	사무소소재지	(전화 :)					
③ 시 공 자	상 호			등 록 번 호			
	대 표 자			법인(주민)등록번호			
	영업소소재지	(전화 :)					
④ 대지조건	대 지 위 치						
	지 번			지 목			
	용 도 지 역		용도지구			용도구역	
사업계획개요			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.				
대지면적(m ²)			건축면적(m ²)				
건 폐 율(%)			연 면 적(m ²)				
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(m ²)			용 적 륜(%)				
⑤건축물명칭		주 건축물수	동	부속건축물	동 m ²		
⑥주 용 도		⑦주택형태		총 세대수	세대		
총 주차 대수	대	착공예정일		준공예정일			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4g/m²)

(10면중 제2면)

⑧※부대시설	시설종류	설치현황		단지내현황		단지외현황			
	※ 도로, 상하수도시설, 전기시설,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, 통신시설,우편함 등 간선시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								
⑨복리시설 분양시설	시설종류	주 용 도		면적(㎡)		개소		기타현황	
⑩오 수 정 화 시 설		형 식				용 량		(인용)	
주 차 장	구 분	옥 내		옥 외		인 근		면 제	
	자주식	대 ㎡		대 ㎡		대 ㎡		대	
	기계식	대 ㎡		대 ㎡		대 ㎡			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(임시사용승인)를 신청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
사업주체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									

I. 동 별 개 요							
주 / 부 속 구 분	☐ 주건축물 ☐ 부속건축물						
⑪동명칭 및 번호							
건 축 주							
설 계 자							
감 리 자							
시 공 자							
주 용 도							
주 택 유 형 별 수 세 대 수	공 공 부 문					민간부문	
	☐ 국민 임대	☐ 공공 임대	☐ 공공 분양	☐ 사원 임대	☐ 근로 복지	☐ 민간 임대	☐ 민간 분양
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
주 구 조							
지 봉							
건 축 면 적 (m ²)							
연 면 적 (m ²)							
지 하 면 적							
용 적 률 산 정 용 연 면 적 (m ²)							
층 수	지하 : 층, 지상 : 층						
높 이 (m)							
승 강 기	승용승강기 : 대, 비상용승강기 : 대						
층 고							
반 자 높 이							
계 단 유 효 폭							
복 도 너 비							
외 벽 두 께							
인 접 세 대 와 의 벽 두 께							

(10면중 제6면)

[illegible]

VI.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			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		
주 건 축 물 의 동명칭 및 번호	㉑※ 층구분	호구분	소유자성명(명칭)	○ 소유권 지 분	○※ 구 분 기 호
			주민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)		
			주 소		
				/	
				/	
				/	
				/	
				/	
				/	
				/	

(10면중 제9면)

[illegible]

구 비 서 류			
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(주택건설사업에 한한다) 시공자의 공사확인서(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			
승 인 안 내			
제출하는 곳	시장·군수·구청장	처리부서	주택담당부서
수 수 료	없음	처리기간	15일
근 거 법 규			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			
유 의 사 항			
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제3호의2	법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		
작 성 방 법			
①~⑮, ○○ :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○ :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. ○ :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기재합니다. ○ :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. ○ : 전용/공용부분의 구조·용도·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. [예 : 아파트(24A, 24B, 32A, 32B등), 상가(A,B,C,D 또는 101, 102, 201, 202등)] ○ : - 전유부분인 경우 : 기재하지 않습니다. (다만,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"복층하층"으로, 윗층은 "복층상층"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) - 공용부분인 경우 :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"각층"으로,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.			